[별지9] 대출거래약정서(연계형 보금자리론용)

대 출 거 래 약 정 서

(개정 2020.12.14, 시행 2020.12.18.)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 - **연계형**)

주식회사 _____ 앞

년 월 일

※은행은 본인에게 이 대출거래약정서(이하"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인	성명	(인)
	주소	

본인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공사")가 수행하는 채권유동화업무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동 채권유동화를 위하여 본건 대출 및 담보권이 공사로 양도(신탁 포함)되는 경우에도 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에 따라 본건 대출을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 합니다.)

대출과목	
자금용도	주택구입 (중도금대출)
대출금액	금 원정
총 대출기간*	( )년 ( )개월(중도금대출기간 포함) * 최초 분할대출 실행일로부터 보금자리론 만기일 까지 총 기간
대출개시일	20 년 월 일
대출만료일	20 년 월 일
보금자리론 전환예정일	20 년 월 일
보금자리론 대출기간	전환예정일로부터 ( )년 * 중도금 대출기간 제외
이자율 (기본약관 제3조제2항 선택	□ 1. 대출개시일로부터 전환특약이행일 전날까지 매 3개월마다 연 [CD+( )%]를 적용하며, □ 1. 대출개시일로부터 전환특약이행일 전날까지 매 6개월마다 연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를 적용하며, □ 1. 대출개시일로부터 전환특약이행일 전날까지 매 6개월마다 연 [잔액기준 COFIX+( )%]를 적용하며, □ 1. 기타 ( ) + ( ) % 를 적용하며 2. 전환특약이행일 이후 대출만료일까지는 전환특약이행일 적용중인 본 대출과 만기 등 금리결정조건이 동일한 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 신규대출의 기본형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 CD(기준금리) : 대출실행일 및 금리변경 적용일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의 CD(91일물) 유통수익율 종가를 적용 ※ COFIX(기준금리) : 대출실행일 및 금리변경 적용일 전영업일의 한국신용정보원이 고시하는 COFIX 금리를 적용
지 연 배상금률	· 연체기간이 ( )개월 이하인 경우 연( )% · 연체기간이 ( )개월 초과한 경우 연( )%

이자 및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 윤년은 366일로 보고 초일산입 말일불산입하여 후취로 계산합니다.
대출실행 방 법	증명서류나 기성고율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상환방법* 및 거치기간	<중도금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보금자리론으로 미전환 시> 1. 중도금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합니다. 2. 이 약정 제9조에 제2항에 따른 미전환수수료로 대출원금의 ( )%를 부담합니다. <중도금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 시> 1. 대출만료일에 금 ( )원을 상환합니다. 2. 위 1항 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전환특약이행일로부터 ( )년 동안 거치하고,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매 1개월마다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합니다.
원금 및 이자납입 방 법*	□ 원금과 이자를 매월 말일에 납입합니다. □ 원금과 이자를 매월 ( )일에 납입합니다. ※ 채무자는 보금자리론 전환 이후 납입일을 1회에 한하여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납입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합니다.
원리금의 계 산	매월 납입해야할 원리금(원금 및 이자)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원금상환방법 또는 이자납입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조기(중도) 상환 수 수 료	대출만료일전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기(중도)상환금액에 ( )%를 곱한 금액을 납입하기로 합니다.
이자납입	□ 자동이체 □ 창구 □ 기타 ( )
입금계좌	( )은행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관계:)
자동이체	□ 입금계좌와 동일 □ ( )은행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관계:)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장치를 통한 계좌입금 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제1조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함	본인	(인)

제2조 지연배상금(연체이자)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하여야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납입**하기로 합니다.

② 대출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본약관 제7조 또는 이 약정 제6조·제7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 제17조 및 고객고지사항 제1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3조 자동이체제도 이용 등

자동이체제도 등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납입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상환 시에는 은행에 직접 납입하기로 합니다.
2.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각종 예금약관 또는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은행의 자동이체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3. 납부일 현재 지정계좌의 잔액이 청구금액에 미달하여 출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직접 납입하기로 합니다.
4. 이 자동이체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해당일 30일 전까지 자동이체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제4조 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5조 담보제공

① 본인은 본건 담보주택에 은행의 승인 없이 그 소유권 이전행위와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등기,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제3자로부터 은행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동 주택은 토지와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②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공사를 위하여 질권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6조 대출금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

대출을 받은후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인정하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담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전부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7조 대출금의 분할실행

①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대출실행명세표 등의 증명자료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최초 분할실행일을 대출 개시일로 보며, 전환특약 이행일을 기준으로 거치기간, 대출만료일 및 약정납입일을 정하기로 합니다.

③ 전환특약 이행일까지 분할실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특약 이행일까지 실행된 금액을 대출금액으로 확정합니다.

④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사유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인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대출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거래조건에 불구하고 대출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대출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하여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외환 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 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4. 위의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거래조건의 변경

'대출상담 및 신청서' 및 제출자료가 허위, 위·변조, 불성실 작성 또는 부실자료로 확인되어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이 공사에 양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거나 은행과 협의하여 이 약정 제1조에 따른 대출기간·대출금액·대출금리 등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 연계형 보금자리론 전환특약사항 -

제9조 거래조건의 변경 및 대출거래 추가약정의 체결

① 본인은 은행의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주택이 준공되고 본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은행에게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약정을 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제5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이 약정서의 거래조건 중에서 전환(예정)일, 대출만료일,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약정납입일을 은행이 공사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 대출거래약정"의 거래조건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데 동의하며, 이러한 거래조건의 변경을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일에 은행이 요청하는 대출거래 추가약정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2. 본인은 제5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 약정서와 본조 제1항 제1호의 대출거래 추가약정에 따른 본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은 추가약정체결 이전에 대출금을 임의로 조기(중도)상환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대출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 원금[조기(중도)상환]의 경우에는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0.1%]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은행에게 미전환수수료로서 지급하기로 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9조에 동의함	본인	(인)

제10조 주택보유수

①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보유한 주택(지분으로 보유한 경우, 복합용도 주택인 경우 주택면적이 1/2이상인 경우,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다만, **본건 담보주택 외에 기존 1주택(이하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9조의 전환특약 이행 후 검증기준일(전환특약 이행일로부터 매 3년)을 기준으로 **추가 주택을 보유(이하 '추가주택')**할 경우 기존주택은 아래 표와 같이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정해진 처분기한 내,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내 **처분(이하 '처분기한')할 것을 약정**합니다.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담보주택 소재지	기존주택 처분기한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역·「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전환특약이행일로부터 1년**
기타 지역	**전환특약이행일로부터 2년**주)

주: 1)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즉, 전환특약 이행일 이후 담보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 해제되는 경우에도 처분기한이 단축되거나 연장되지 않음

2)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② 제1항의 약정에 따른 처분사실을 **처분기한 내 은행 또는 공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 또는 공사가 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미 처분 시 기한이익 상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 또는 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미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날 (이하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에 통지 도달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를 준용합니다. 또한, **확인일로부터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③ 향후 정부 주택전산망 기타 증명에 의하여 주택 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건 대출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주택보유현황 (본건 담보주택 제외) ※ 배우자 소유 합산	☐ 무주택 ☐ 1주택(처분 예정) (처분기한 : ☐ 1년, ☐ 2년) * 처분기한 내 처분대상 주택 미처분 시 이 약정서 제8조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또한, 처분대상 주택 미처분이 확인되는 날로부터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처분대상 기존주택 소재지	
위 특약사항 제10조의 주택보유 수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약정 위반 시 기한이익 상실 및 보금자리론 추가이용 제한 등에 동의합니다.	
본인 (인)	

제11조 채권의 양도·신탁 및 피담보채권

본인은 공사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와 관련하여 본건 대출 및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동의합니다.

1. 본인은 은행이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공사에 양도하고 공사가 이를 신탁함을 승낙하며, 본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도 공사는 본인에 대하여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이 실제로 공사로 양도되는 시점까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공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은 위 1호의 양도 및 신탁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은행이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시점에 확정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 등을 위하여 본건 근저당권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11조에 동의함	본인	(인)

- 토지 후취담보에 관한 특약 -

제12조 토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본건 대출이 토지 미등기된 아파트를 담보로 한 경우에는 토지 미등기 사유가 없어져 본인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즉시 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곧 이행하기로 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12조에 동의함	본인	(인)

- 행정전산망 이용 동의 -

제13조 무주택검증·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본인 및 배우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결혼예정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 확인, 본인의 전입사실 확인 및 이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13조에 동의함**	본인	(인)

- 결혼예정자에 대한 특약 -

제14조 결혼사실증명

본인은 결혼예정자 자격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기에 본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 또는 공사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결혼예정자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본건 대출이 기한이익상실 처리되는 것과, 우대금리 적용으로 인한 상환일까지의 이자차액을 전액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14조에 동의함**	본인	(인)

- LTV·DTI 우대 적용 특약 -

제15조 LTV·DTI 우대 적용

담보주택 소재지가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조정지역(과열지역) 등' 인 경우로서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LTV와 DTI 강화를 적용하지 않으며 실수요자 요건에 관한 내용이 진술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본건 대출은 기한이익상실 처리됩니다.

- 실수요자 요건이란 구입용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15조에 동의함**	본인	(인)

-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에 관한 특약 -

제16조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1.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이외에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대출을 말합니다.
2.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점수 미달인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위 1호에도 불구하고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이 취급된 경우에 공사는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이외에 잔여채무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특약사항 **제16조에 동의함**	본인	(인)

- 담보주택 전입에 관한 특약 -

제17조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에 대한 담보주택 전입 및 전입유지

① 본인은 본건 담보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금을 수령하였기에, **전환특약이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이하 "전입요건")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간 담보주택에 계속거주(이하 "전입유지요건")하기로 확약**합니다.

② 제1항의 약정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되거나 전입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입기한의 익일을 기준으로 제1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③ 제1항의 약정에 따른 전입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되거나 전입유지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확인일을 기준으로 제1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위 특약사항 **제17조에 동의함**	본인	(인)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에 관한 특약사항 -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연금 개별인출 등으로 보금자리론 전액상환이 가능한 경우 주택연금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시점의 연금가입요건에 따라 전환여부가 결정되며, 연금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연금 전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우대금리는 대출 전액상환일까지 기본 우대금리 0.15%p와 추가 우대금리* 0.15%p를 적용한 최대 0.3%p입니다. 우대금리는 만 55세 이후에 주택연금 전환 후 전환장려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적용 우대금리(해당 금리에 체크) :
□ 0.15%p 또는 □ 0.30%p*

* 기존대출('15.12.31일 이전 실행건)이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대출전기간동안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상환) 대출인 경우

3. 주택연금 전환 후 지급되는 우대금리 누적액(전환장려금)은 납부한 보금자리론 이자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매년 말 연복리*로 적립됩니다. 다만, 보금자리론 이용합계액 2억원 이하 대출실행금액에 대해서만 전환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연복리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하는 이자율(예시:한국은행 고시 정기예금 연평균금리 등), 대출 완제일 해당연도 우대금리는 직전년도 연복리 금리를 적용

- 대출실행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대금리 한도율*을 적용

* ① 우대금리 한도율(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상)
= 2억원 ÷ 대출실행금액

- 보금자리론이 2건 이상 있는 경우에는 대출실행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2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하고, 2억원을 최초로 초과하는 당해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만 우대금리 한도율*을 적용

* ② 우대금리 한도율(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상)
= (2억원−기 이용중인 보금자리론 대출실행금액 합계액) ÷ 2억원을 최초로 초과하는 당해 보금자리론의 대출실행금액

4. 우대금리 누적액은 주택연금 보증약정 철회기한(최초 연금지급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주택연금 가입고객 명의 계좌로 기타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5. 대출 전액상환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우대금리 누적액이 지급됩니다.

6. 우대금리 누적액은 대출 전액상환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 3개월 이내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소멸됩니다.

7.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대출이 공사로 양수된 경우에만 우대금리 누적액을 지급합니다.

8.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는 일정 요건((만 55세 이상이고 대출전액상환일이 주택연금 신청일부터 주택연금 전환일(실행일) 이내)인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우선 수취한 후 주택연금 약정철회기간 경과 시에 환급합니다.

9. 배우자 채무인수 시의 기존 우대금리 누적액은 배우자가 대출만기에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유지되며, 제3자 채무인수 시에는 기존 우대금리 누적액이 소멸되며, 채무인수일로부터 신규 적립됩니다.

10. 배우자는 대출만기에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도 우대금리 누적액을 포기하고 채무인수 가능하나, 제3자 채무인수는 채무인수자 또는 채무인수자의 배우자가 대출만기에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본인	(인)	자필확인	

- 기타 특약사항 -

본인	**(인)**	**자필확인**	

- 고객 고지 사항 -

1. 본인이 신청일 현재 '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상담 및 신청서'에 주택보유수, 임대차 현황 또는 상환예정 기존대출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본건 대출은 기한이익상실 처리됩니다.

2. 원리금의 납입일변경(1회에 한함)을 제외하고는 처분조건 기한변경, 담보주택 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3.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의사 표시는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가능하나, 공사가 사전심사한 대출의 경우(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인)	자필확인	